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강준현 · 김문수
민형배 · 박균택 · 서삼석
장종태 · 전진숙 · 정준호
정진욱 · 조인철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‘기반시설 조성 등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,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,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,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1호 · 제2호, 제24조제1항제3호)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조성 등을”을 각각 “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

제25조제2항제1호 중 “제24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24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제24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제24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)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1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<u>조성</u> 등을 위한 시·도에 대한 재정지원 2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<u>조성</u> 등을 위한 시·군·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<u><신 설></u> 3. (생략) ② (생략)	제24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. 1. ----- ---- <u>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</u> 등을----- 2. ----- --- <u>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</u> 등을----- 3. <u>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</u> 등을 위한 출자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구분과 재원) ① (생략)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1. <u>제24조제1항제1호</u>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: 광역지원계정 2. <u>제24조제1항제2호</u>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: 기초지원계정	제25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구분과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<u>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</u> ----- ----- 2. <u>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</u> ----- -----

③·④ (생략)

제26조(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) ① 기금관리조합에
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
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소멸대응
기금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다.

1.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
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
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
회

가.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
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
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
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
항

나. (생략)

2.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
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
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
회

가.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
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
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
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
항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
원회 설치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-----
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
호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-----
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
호-----

나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제29조(투자협약의 체결)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2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에</u> 따른 지 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 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 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(이 하 “투자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 결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9조(투자협약의 체결) ① --- -----<u>제24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